

2 대학언론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호서대학교 내에 대학언론사를 두며, 대학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는 “호서대학신문”이라 칭하고, 대학언론사가 운영하는 방송국은 호서대학교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

② 호서대학교 방송국의 영자 표기는 H.S.B.S(Hoseo University Broadcasting Station)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대학언론사는 본교 학칙에 따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여 학내의 여론을 창달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립과 독립의 원칙) 대학언론사는 정치적, 상업적 제요소를 배제하고 사업 및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건지한다.

제4조 (사업) 대학언론사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호서대학신문 발간
2. 방송국 운영
3. 대내·외 홍보 및 각종 홍보물의 발간
4. 행사 사진촬영 보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기구와 조직

제5조 (사장) 사장은 본 대학교 총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학언론사를 대표하며,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전체업무를 통괄한다.

제6조 (편집인)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은 본 대학 학생처장이 하며 신문편집에 대한 업무를 통괄한다.

제7조 (주간교수) ①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신문의 편집,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간사 및 학생기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대학언론사의 주간교수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및 운영하는 간사 및 국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 (간사) ① 대학언론사의 간사는 주간교수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사장,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인 및 주간교수를 보좌하고 사업관리 그리고 경리 및 행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언론자문위원회) 대학언론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위촉하는 언론자문위

원회를 구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장)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장은 학생기자를 대표하고 주간교수의 지휘 하에 신문발간의 모든 실무를 수행하는 학생기자의 활동을 감독한다.

제11조 (편집회의) 호서대학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제12조 (편집회의 구성) 편집회의는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간교수
2. 간 사
3. 편 집 장
4. 학생기자

제13조 (실무국장) 방송국의 실무국장은 방송국의 국원을 대표하고 주간교수의 지휘 하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과 제작 및 운영하는 국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제14조 (부서) 방송국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기술부 등을 둔다.

제15조 (부장) 각 부장은 4학기를 수료한 국원 중에서 선발하되 실무국장의 제청에 주간교수가 임명한다.

제16조 (분장) 각 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편성부 : 편성부는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
2. 보도부 : 보도부는 뉴스취재 및 이에 따른 제반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다.
3. 아나운서부 : 아나운서부는 뉴스프로그램 및 아나운서가 담당해야할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4. 기술부 : 기술부는 방송의 기술운영 및 이에 따른 기재관리와 정비를 담당한다.

제 3 장 학 생 기 자

제17조 (부서) 학생 편집장 밑에 기획부, 편집부, 취재부 등을 두며, 각 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부 : 특집계획 등 일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재정 및 광고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부 : 신문의 편집 및 편집을 위한 자료의 정리,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취재부 : 학내·외 기사의 취재를 담당한다.

제18조 (분장) ① 학생편집장은 주간지 지도하에 신문의 편집,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완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② 학생기자는 주간지 지도를 받아 기사를 취재하고 신문을 편집한다.

제19조 (임명) 학생기자의 임명과 해임은 주간지의 제청으로 사장이 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

제20조 (자격) 학생기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方正하고 언행이 건실한 모범생이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3. 학생회 서클에 가입하지 않은 자라야 한다.

제21조 (징계) 학생기자로서 학칙과 사규를 위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학언론사의 지휘계통에 불복, 권위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그 직을 해임한다.

제 4 장 국 원

제22조 (국원의 자격) 방송국의 국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소정의 선발과정 및 수습기간을 거친 뒤 실무국장의 추천으로 주간교수가 임명한다.

제23조 (국원의 종류) 방송국의 국원에는 정국원, 수습국원 및 명예국원으로 한다.

1. 정국원은 1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실무국장의 제청으로 주간교수가 임명한다.
2. 수습국원은 본교 1학년 재학생으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3. 명예국원은 본 방송국 동문과 본 방송국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제24조 (자격상실) 본 방송국 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
2.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2.8에 미달하는 경우와 학생회 및 서클에 가입한 때
3. 입대하거나 휴학한 때

제 5 장 재 정

제25조 (재정) 대학언론사는 교비로 운영하며, 학교보조금, 신문 광고료 및 기타수익사업 수입을 주재원으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대학언론사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재무회계지침에 따른다.

제27조 (수당) 주간교수, 간사, 학생기자, 국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대학언론사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